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1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107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7. 3. 2.
판 결 선 고	2017. 3. 3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6. 28.자 취득세 68,420,020원, 교육세 6,842,000원, 농어촌특별세 3,421,000원의 각 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28.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68,420,020원, 지방교육세 6,842,000원, 농어촌특별세 3,421,000원, 취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02,630원, 지방교육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0,260원,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5,1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1

원[1]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7. [redacted]시 B, C, D,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주식회사 덕흥물산으로부터 1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6. 23.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세 68,420,020원, 지방교육세 6,842,000원, 농어촌특별세 3,421,000원(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6. 1. 27. 법률 제13868호로 개정되어 2016. 7.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 기한 세액감면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8. 원고의 세액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신고에 따른 이 사건 취득세 등과 취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02,630원, 지방교육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0,260원,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5,130원(이하 위 각 가산세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가산세'라 한다)의 납부고지서를 발행·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취득세 등과 이 사건 각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1) 소장에는 취득세 51,391,990원, 지방교육세 5,139,190원, 농어촌특별세 2,569,600원(각 가산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1

원고가 다투고 있는 취득세 등은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취득세 등은 법률상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 또한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취득세 등과 이 사건 각 가산세의 구분

㈎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수 개의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각 납세의무가 양립될 수 없는 중복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세목별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고, 가산세와 본세 역시 별개의 부과처분이다.

㈏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일 뿐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과 이 사건 각 가산세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으로 나누어서 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1

(2)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직권판단

㈎ 지방세법 제18조는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52조 제1항은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7조 제4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해당 본세(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모두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해당한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일 뿐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가사 이 부분 소를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한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아래의 이 사건 각 가산세에 관한 본안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각 가산세에 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산세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행·교부한 행위는 이 사건 각 가산세에 관한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가산세에 관한 피고의 수납행위 또는 피고가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가산세에 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1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각 가산세에 관한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받아야 함에도 피고는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에 취소사유가 없으면 가산세에 고유한 위법사유가 없는 한 적법한 처분이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자진 신고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이에 대한 이 사건 각 가산세를 부가하여 납입을 독촉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취득세 등 본세에 관한 징수처분 자체에도 고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가정적 판단 : 신고행위 하자 및 승계 여부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경감되지 아니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후에 위 규정에 따른 경감을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 주장을 이 사건 신고행위에 당연무효인 사유가 있고, 그에 기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1

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본세에 관한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 및 징수처분을 다투는 취지로 가정하여 살펴본다.

우선 원고의 이 사건 신고행위가 하자 있는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4, 을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F의 개인사업자(A) 및 법인사업자(A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의 기재내역(사업장소재지, 사업종류, 사업종목, 대표자 등에 별 차이가 없음), 지방세 감면신청서 기재내역(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였는지 여부에 '아니오'라고 체크됨)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개인사업체인 'A'와 원고는 상호, 사업장소재지, 업태 및 종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로 보이는바(한편, 위 사업체 사이에 공정의 연속성이 없어 원고가 신규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이 정한 취득세 감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결국 원고가 위 시행령에 따른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1

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6. 6. 28.자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한 각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각 가산세에 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민성

판사 권주연

판사 김달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1

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6. 1. 27. 법률 제13868호로 개정되어 2016. 7.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